

#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3465
----------	------

2026년 3월 9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김길영 의원 외 20명

나. 제안일 : 2026년 2월 9일

다. 회부일 : 2026년 2월 12일

라. 상정일 :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6년 3월 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김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사업의 개념과 범위를 제6조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 이를 제4조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조문 간 체계 정합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를 현행 조례의 체계에 맞게 정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부 조문에 사용된 용어가 관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과 상이하므로 이를 재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서울도심 기본계획 사업의 인용 조항을 제4조에서 제6조로 변경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변경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7조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의 근거 조문을 “제4조1)”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제6조2)”로 정정하여 조문 간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 제8조에서 사용 중인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통상적 표현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시책 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시 <b>제4조</b> 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시책 반영) ----- ----- <b>제6조</b> ----- -----.
제8조(재원의 확보)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b>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b> 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재원의 확보) ----- ----- <b>서울특별</b> <b>시 도시개발특별회계</b> -----.

### 나. 검토 내용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문 오기 정정 및 용어 표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경이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수반하는 규정 신설·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 성격의 개정으로 판단됨

1)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도심의 정비·관리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서울도심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현행 조례 제7조(시책 반영)는 투자 심사 및 예산편성 시 서울도심 기본 계획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인용조문을 “제4조”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인용 조문을 실제 규정 내용에 맞게 “제6조”로 정비하여 조문 간 체계 정합 성과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6조(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경관법」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2.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중·저층 건축물 위주의 소단위형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한옥밀집지역 보전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책 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시 제4조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조문 오기는 2024년 해당 조례 개정<sup>3)</sup> 당시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 과정에서 인용 조문의 정비 미흡에 따른 것으로 향후 조문 체계의 변동이 수반되는 개정 시에는 관련된 인용 조문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과거에는 법령·조례에서 명칭 표기를 관행적으로 붙여 쓰는 경우가 있었으나 한글맞춤법상 띄어쓰기

3) 서울특별시조례 제9167호, 2024.3.26. 일부개정

원칙에 부합하고 가독성 제고 측면에서도 띄어쓰는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해당 회계의 설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서는 동일 회계의 명칭을 붙여쓰기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 향후 회계 명칭 표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의 해당 명칭 표기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④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정책 변경이나 권리·의무의 변동 없이 인용조문 오기 정정 및 용어 표기를 정비하는 조문정비 성격의 개정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한글맞춤법상 띄어쓰기 원칙 및 가독성 제고 측면에서 개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설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동일 회계 명칭을 붙여쓰기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 조례 간 표기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례의 명칭 표기도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아울러, 이번 인용조문 오기와 같은 입법 미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문 체계의 변동이 수반되는 조례 개정 시에는 관련된 인용 조문 전반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도심 기본계획 사업의 개념과 범위를 제6조에서 인용하고 있으므로 제7조(시책 반영)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제4조”에서 “제6조”로 정정하여 조문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8조의 용어를 통상적 표현으로 수정(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한 것으로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경 명

☎ 02-2180-7954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65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김길영 의원(1명)

찬 성 자: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효원,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허·훈, 홍국표 의원(20명)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사업의 개념과 범위를 제6조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 이를 제4조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조문 간 체계 정합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를 현행 조례의 체계에 맞게 정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부 조문에 사용된 용어가 관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과 상이하므로 이를 재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도심 기본계획 사업의 인용 조항을 제4조에서 제6조로 변경함 (안 제7조)
- 나.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변경함 (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4조”를 “제6조”로 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시책 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시 <u>제4조</u>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p> <p>제8조(재원의 확보)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u>서울특별시도</u> <u>시개발특별회계</u>를 사용할 수 있다.</p>	<p>제7조(시책 반영) ----- ----- <u>제6조</u>----- ----- -----.</p> <p>제8조(재원의 확보) ----- ----- ----- <u>서울특별시</u> <u>도</u> <u>시개발특별회계</u>----- --.</p>

#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도심 기본계획 사업의 개념과 범위를 제6조에서 인용하고 있으므로 제7조(시책 반영)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제4조”에서 “제6조”로 정정하여 조문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8조의 용어를 통상적 표현으로 수정(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한 것으로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경 명

☎ 02-2180-7954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